

〔 사고신고 담보금 〕 처리를 위한 약정서 지급정지가처분담보금

별지와 같이 (사고신고, 지급정지가처분명령이 송달)된 어음 또는 수표(이하 “어음”이라 한다)의 발행인(환어음이 인수된 경우에는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_____는 (사고신고, 지급정지가처분명령의 송달)의 이유가 어음금 지급자금부족을 윤폐하여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면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보장하고 어음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어음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금상당액을 예탁함에 있어 동 어음의 발행인을 요약자(이하 “고객”이라 한다), 지급은행을 낙약자(이하 “은행”이라 한다), 정당한 권리자임이 판명된 자를 제3자(이하 “제3자”라 한다)로 정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 본 약정서에서 “지급정지가처분명령”이라 함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은행”으로 하여금 “고객”的 당좌(가계당좌)예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모든 가처분명령을 말한다.

제1조 고객은 금 _____ 원을 제3자를 위하여 은행에게 예탁하고 은행은 이를 제3자를 위하여 수탁한다.

제2조 은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3자의 지급청구에 따라 제1조의 예탁금을 제3자에게 지급한다.

1. 제3자가 어음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판결확정증명 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은행이 인정하는 증서를 제출한 경우
2. 제3자가 확정된 이행권고결정문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문을 제출한 경우.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가 제기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고객이 제기한 어음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제3자가 승소하고 그 판결확정증명 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은행이 인정하는 증서를 제출한 경우
4. 고객이 제3자에 대한 어음금지급에 동의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 다만, 동 어음에 대한 법원의 지급정지가처분명령이 송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은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1조의 예탁금을 고객에게 지급한다.

1. 제3자가 제기한 어음금지급청구소송에서 고객이 승소하고 그 판결확정증명 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은행이 인정하는 증서를 제출한 경우
2. 고객이 어음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판결확정증명 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은행이 인정하는 증서를 제출한 경우
3. 당해어음채무로 인하여 고객이 제3자를 위하여 별도로 담보공탁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 공탁해당금액. 다만, 고객이 당해어음의 지급정지가처분신청과 관련하여 담보공탁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4. 고객이 당해어음을 회수하여 제시하는 경우



5. 당해어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계속증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은행에게 제출 한 바가 없고 지급 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소송계속증임을 입증하는 서면이 은행에게 제출되었더라도 동 소송이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각하 또는 취하되었을 경우에는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때에 지급하고,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각하 또는 취하되었을 경우에는 동 사실을 고객이 입증한때에 지급함
 6. 당해어음이 지급제시기간내에 제시되지 않은 경우

6. 당해어음이 지급제시기간내에 제시되지 않은 경우

제4조 (사고신고, 지급정지가처분신청) 사유가 분실, 도난이고 당해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을 받아 법원의 판결문을 은행에게 제출하고 1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은행은 제1조의 예탁금을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은 고객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신고된 권리를 보류하고 증권의 무효를 선고한 제권판결문을 제출한 경우 및 제권판결불복의 소가 제기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은행이 본약정서의 규정에 따라 제3자 또는 고객에게 제1조의 예탁금을 지급한 때에는 은행은 본약정상의 채무로부터 면책되며 지급후 본약정서에서 정한 별도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고객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6조 은행이 본약정서의 규정에 따라 제3자 또는 고객에게 제1조의 예탁금을 지급하기 전에 본약정서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은행은 예탁금을 변제공탁할 수 있고 변제공탁함으로써 은행은 본약정상의 채무를 면한다.

제7조 제1조의 예탁금처리에 관하여 본약정서에 정하지 않은 기타사항은 어음교환업무규약 및 동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고객과 은행은 본약정관련 어음소지인의 동의없이 본 약정을 해약하지 못한다.

한국어

요약자(고객) 성명 (인)

주 소(선택항목)

전화번호(선택항목)

낙약자(은행) (주)하나은행 지점 (인)

